

경관조경위원회 규정

제정 2018. 02. 20.
1차 개정 2019. 0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경관, 조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, 보전,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조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법률 및 상위 규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내 경관관리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내 조경관리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안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약간 명을 객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학과 교원 4인, 행정지원처장, 기획예산팀장, 학생행복팀장 및 시설팀장과 학생을 대표하여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06.25)

제5조(위원장) 위원장은 관련학과 전공 교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중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7조(회의 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간사) 본 위원회는 행정지원처 시설팀에서 주관하며, 본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(개정 2019.06.25)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